의 안 버 호

2320

【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 】

# 사 보 고

#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8. 20.(화) 천병태외 1,440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8. 22.(목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10. 14.(월)

#### 2. 청원설명 요지

#### 가. 청워개요

O 청 원 명: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

○ 청 원 인: 천병태외 1,440명

O 소개의원: 안영호 의원

O 청원 내용

- 경상좌도 병영성 북문지 정비사업 시 북문루 복원 요청 ※ 복원 시 청원인·전문가 참가 심의 활용 요청
- 병영성 정비사업 전반 지자체의 주민설명회 요청
- 교통위험지역(북문지 주변도로) 개선 방안 모색 및 설명 요청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9호
- O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제10조 및 제11조

#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주)

O 본 청원은 천병태외 1.440명이 병영성 정비사업에 대하여 북문루를 복 원해 달라는 사업 요청 및 북문지 주변도로 개선 방안 모색 등 병영 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임

8 (제268 -본회의제2차부록)

○ 병영성 북문지는 경관이 확보되어 있고, 병영의 중앙길에 있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북문루가 조성되면 성의 모습을 잘 알릴 수 있어 주민들의 문루 복원에 대한 요구는 이해가 되나 병영성이 국가유산(사적제320호)임을 감안하여 문화재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의견을 반영하여 복원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.

○ 병영성이 주택가에 밀집해 있어 사업 추진 시 주거환경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병영성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도 필요해보임.

○ 또한, 북문지 주변 교통위험 지역 개선 방안 등은 교통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많은 사업 예산이 투자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부서 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.

○ 제반 사항 검토 결과 위 청원의 내용은 집행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 하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집행부로 이송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(청원 채택)

5. 채택 의견서 : 붙임 1

# 근 거 법 규

## 지방자치법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조례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
- 2. 예산의 심의·확정
- 3. 결산의 승인
-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- 5. 기금의 설치 · 운용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
-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· 처분
-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- 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- 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· 협력
- 11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###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

- 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.
  - 1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
  - 2.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 능한 경우
  - 3.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 는 경우
- 제11조(심사보고)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.
  - 1.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는 청원
  - 2.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

붙임 1	청원 채택 의견서
청 원 명	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
청 원 인	천병태(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성6길 23, 102호)외 1,440명
심사경과	<ul> <li>접 수 일: 2024. 8. 20.(화)</li> <li>회 부 일: 2024. 8. 22.(목)</li> <li>위원회 상정: 2024. 10. 14.(월)</li> <li>본회의 상정: 2024. 10. 18.(금)</li> </ul>
심사결과	청원채택

#### 의 견 서

- 본 청원의 건은, 천병태【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성6길 23, 102호】외 1,440명이 제출한 청원건으로 병영성 북문지 정비사업 시 북문루 복원을 요청하고 북문지 주변도로 개선방안 모색 등 병영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청원으로, 제268회 울산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함.
- 병영성 북문지는 경관이 확보되어있고, 병영의 중앙길에 있어 북문루가 조성되면 성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점 등 주민들의 문루 복원에 대한 요구는 이해가 됨. 단, 병영성이 국가유산(사적제320호)임을 감안하여 문화재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원의 타당성을 확보 하여야 할 것이며,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병영성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도 필요할 것임. 제반사항 검토 결과 본 청원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종합적 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함.